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3 월 7 일

여 수 시 장 서경민



여수시 조례 제2181호

붙임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높이 6미터 이하) 건축물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조립식판넬 또는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제9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4(현장점검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여수시 건축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 중 개정 규정 제9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9조의2(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p> <p>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p>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p> <p>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높이 6미터 이하) 건축물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조립식판넬 또는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p><신 설></p>	<p>제9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p>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2(생략)

제9조의4(현행 제9조의2와 같음)